

#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

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「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30일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
## 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
- 지원대상 :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
- 지원규모 : 약 600개사(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)
- 지원조건 : 신규채용 근로자 3~6개월 고용유지
-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200만원
  - \* 3개월 유지시 150만원(50만원\*3개월)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(인센티브)
  - \*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,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
- 신청기간 : 2023. 4. 3. ~ (예산 소진시까지)

## 2. 지원절차



\* 이미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어도 사업참여신청 후 적격통보를 받아야 지원금 지급신청가능

### 3. 지원 대상 및 조건

#### ① (지원대상 및 자격)

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|
| 소상공인<br>(사업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<br/>※ 개업일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(월할 또는 일할) 3억원 이하</li> <li>○ 종사자 수 기준 :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·숙박·도소매 5인 미만(제조·운수·건설 등 10인미만)으로 대표자 제외<br/>※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,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</li> <li>○ 2023. 1. 1.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</li> <li>○ 1사업장 1인 지원<br/>※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</li> </ul> |
| 근로자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만 18세이상(2005.1.1.이전출생자)이며, 2023. 1. 1.이후 (4대보험가입, 근로계약서 작성기준) 신규고용 된 자</li> <li>○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(주휴, 휴식시간 제외)</li> <li>○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</li> </ul>   |

#### ② (지원제외)

| 구 분 | 내 용   |
|-----|---|
| 근로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4대 보험 미가입자(만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)</li> <li>· 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/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</li> <li>· <u>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</u></li> <li>· <u>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</u></li> </ul>   |
| 사업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)</li> <li>·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(지원제외업종 불임1)</li> <li>·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,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</li> <li>·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</li> <li>·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</li> <li>·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(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10인 이상)인 사업주</li> <li>· 최근 2년간 <u>‘21년 ~ ‘22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</u><br/>*수혜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며 동일사업주여도 지원받은업체와 새로 신청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체인 경우 신청 가능함</li> <li>· <u>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</u></li> <li>· 폐업,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</li> </ul> |

## 4. 사업 참여 신청

□ 신청기간 : 2023년 4월 3일 부터 / 사업비 소진 시 마감

□ 사업 참여 신청(접수)서류

-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-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-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
- ⑤ 근로계약서 사본
-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전체인원)

□ 신청(접수)방법 : 팩스, 이메일

- 팩 스 : 042-380-3093
- E-mail : [sbc@djbea.or.kr](mailto:sbc@djbea.or.kr)

□ 적격여부 검토 승인

-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
  -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,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
- \*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,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

## 5. 지원금 신청

□ 지원금 신청

- 1차(지원금) :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
- 2차(인센티브) : 추가 3개월 고용유지(고용일로부터 6개월 유지)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

□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 -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작성, 서류발급

-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
- ②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(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)
-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전체인원)
-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

□ **신청방법** :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

□ **지원금 지급**

-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
-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,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
- \*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,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
- \*폐업, 관외이전, 4대보험 미유지 및 체납,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,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

## 6. 유의사항

□ **종사자 수 확인**

- 신규 고용 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(제조업, 건설·운수업은 9인)까지 가능하며 예외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
-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
-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

□ **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**

- 연 매출 확인은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
- 연간 매출액 월할 계산은 개업월을 기준으로 환산함
- 2022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2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
- 20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월별 매출 자료\*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

- 사업신청 시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이며 제출 전월까지 기준으로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됨

\*(월별 매출 자료) ①신용카드매출자료 ②전자(세금)계산서 매출내역  
③현금영수증 매출내역 / 3종 제출

## □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

- 고용유지기간 : 최소 3개월 이상
- 근로시간 :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
-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:
  -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
-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유지 3개월 이후, 지원금 지급 전 퇴사한 경우 :
  -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일자,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각각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
-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:
  - 지원근로자 중도 변경할 수 없음
  -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
-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(접수)하는 경우 :
  - 최초 사업 신청 시점에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근로자에 대해 신청 및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
## □ 지도감독

-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

□ 환수

- 오지급·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
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

□ 기타

-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,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7. 문의
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(☎042-380-3084)

- 붙임 1. 참고자료(제출서류 발급처 등)
2.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
  3.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

# 붙임-1

# 참고자료

<참고1 : 제출서류 발급처>

| 구분          | 서류명   | 발급처   |
|-------------|---|---|
| 사업자<br>확인서류 | 사업자등록증  |   |
|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명   |   |
| 매출액<br>확인서류 |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<br>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<br>신용카드매출자료<br>전자(세금)계산서 매출내역<br>현금영수증 매출내역 | 세무서,<br>국세청 홈텍스(hometax.go.k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4대보험<br>관련  |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|
| 근로자<br>확인서류 |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 | 국민건강보험공단  |
|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   |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,<br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<br>(efamily.scourt.go.kr) |
|             | 근로계약서   | 자체양식<br>또는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참고2 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>

| 4대 사회보험<br>사업장 가입자 명부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
| 확인용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|
| 발급번호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발급일시 |        | 사업장 관리번호 |      |       |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국민연금            | 건강보험 | 산재보험   | 고용보험     |      |       |
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|
| 사업장 명칭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|
| ■ 가입 내역(발급일자 현재기준)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1 / 1 |
| 연번                    | 주민(외국인)<br>등록번호 | 성명   | 자격 취득일 |          |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국민연금   | 건강보험     | 산재보험 | 고용보험  |
| 1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박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김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|
| 이 하 여 백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|

<참고3 :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>

|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--|--|--|---|
| 보험구분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건강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금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고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산재 |
| 통합납부자번호<br>(사업장관리번호)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사업장명   |  |  |   |
| 소재지  |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(고용/산재) 정보 ※ 고용/산재 정보는 고용/산재만 신청한 경우에 표시됩니다. |  |  |   |
| 건설공사명  |  |  |   |
| 보험성립일  |  | 보험소멸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사업개시번호 및<br>공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
| 용도   |  |  |   |

# 표준근로계약서

\_\_\_\_\_ 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 \_\_\_\_\_ 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기간의 정함 없음 (별도로 정할 경우 기간 명시)
2. 근로개시일 : \_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부터
2. 근무장소 :
3. 업무의 내용 :
4. 근로시간 : \_\_\_\_시 \_\_\_\_분부터 \_\_\_\_시 \_\_\_\_분까지 (휴게시간 : \_\_\_\_시 \_\_\_\_분~ \_\_\_\_시 \_\_\_\_분)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\_\_\_\_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\_\_\_\_요일
6. 임금
  - 시간(일, 월)급 : \_\_\_\_\_ 원
  - 상여금 : 없음 (    ), 있음 (    ) \_\_\_\_\_ 원
 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없음 (    ), 있음 (    )  
     ○○ 수당 \_\_\_\_\_ 원,   ○○ 수당 \_\_\_\_\_ 원  
     ○○ 수당 \_\_\_\_\_ 원,   ○○ 수당 \_\_\_\_\_ 원
 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\_\_\_\_\_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   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   )
7. 연차유급휴가
 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8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  
 고용보험    산재보험    국민연금    건강보험
9. 근로계약서 교부
 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10. 기 타
 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

\_\_\_\_\_년    \_\_\_\_\_월    \_\_\_\_\_일

(사업주) 업 체 명 : \_\_\_\_\_ (전화 : \_\_\_\_\_ )  
 주 소 : \_\_\_\_\_  
 대 표 자 : \_\_\_\_\_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 \_\_\_\_\_  
 연 락 처 : \_\_\_\_\_  
 성 명 : \_\_\_\_\_ (서명)

<참고5 : 지원제외업종>

| 표준산업분류                | 업종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33409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|
| 46102 중               | 담배 중개업   |
| 46107 중              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|
| 46209 중               | 잎담배 도매업  |
| 46333                 | 담배 도매업<br>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  |
| 46416, 46417 중        | 모피제품 도매업<br>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|
| 46463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|
| 47640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|
| 47811 중               | 약국, 한약국  |
| 47859 중               | 성인용품 판매점   |
| 47911, 47912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|
| 47993 중               | 다단계 방문판매   |
| 52991 중              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 |
| 56211                 | 일반유흥주점업  |
| 56212                 | 무도유흥주점업  |
| 58122 중              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|
| 58211, 58212, 58219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 |
| 63999 중              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  |
| 64                    | 금융업  |
| 65       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 |
| 66       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<br>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<br>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   |
| 68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업<br>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<br><br>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)은 신청가능<br>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<br>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|
| 76390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|
| 711, 712             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|
| 731                   | 수익업  |
| 73904 중               | 감정평가업  |
| 75330                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  |
| 75993                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|
| 75999 중              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|
| 86                    | 보건업<br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  |

| 표준산업분류  | 업종  |
|---------|---|
|         | *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 은 신청가능<br>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<br>(국세청은 보건업)                   |
| 91113  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|
| 91121   | 골프장 운영업   |
| 9122 중 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  |
| 91221 중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|
| 91241 중 | 복권 판매업  |
| 91249 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|
| 91291  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  |
| 9612 중 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* 안마원 규모(300M <sup>2</sup>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6992  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 |
| 기타     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<br>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<br>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
일반유희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
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 
통관업(52991 중), 감정/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>

| 재해피해 소상공인 | 용자 허용 업종   |
|-----------|--|
| 공통        | 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   |
| 관광특구지역 소재 | (추가) 일반유희주점업(56211), 무도유희주점업(56212)  |
| 특별재난지역 소재 | (추가)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 |



